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최민희·윤건영·박은정

한병도・김 현・정을호

허 영·전현희·김원이

강득구 · 허종식 · 이해민

조인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 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 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 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 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9명으로"를 "15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 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 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이사회의 이사와 공사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사장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를 받아 임명한다. ③ -----이사회의 제청으로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15명으 구성한다. 로----.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위원회가 임명한다. 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

-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신 설>

<u>④</u>·<u>⑤</u> (생 략)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u><신 설></u>

<신 설>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7) -----

지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 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⑦ ~ ⑨ (생 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12. (생 략) ② (생략) <신 설>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6.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